

2025년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 공고

경기도 지역 벙커C유 및 정제유(이온정제유, 감압정제유), 고체연료 등 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연료 사용시설을 청정연료(LNG, LPG)로 전환하여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추진되는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17일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의 B-C유, 부생유, 정제유 등의 중질유, 및 고체연료 사용시설을 청정연료로 교체하는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
- 2018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98,388톤이며, 배출원별 발생량은 산업 분야의 제조업 연소 부문이 35,099톤(35.7%)으로 최대배출원으로 조사되어 대책 마련 필요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21.5.

○ 지원내용

- 벙커C유, 정제유(이온정제유, 감압정제유 등) 액체연료, 고체연료 사용시설의 청정연료(LNG, LPG) 사용시설 교체 비용 최대 90% 지원
 - ※ 사업계획 변경 및 지자체 예산편성에 따라 보조금 조정 또는 보조금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 보조금 지원 한도는 <공급연료 종류·시설 규격별 설치비 및 보조금액> 기준을 따름.
- 보조금 분담 비율 :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20%, 자부담 10%(VAT 제외)

2. 지원대상

○ 지원 자격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으로 보일러, 건조시설 등 대기배출시설의 사용연료가 중유(벙커-A, 벙커-B, 벙커-B), 저황황스유(LSWR), 정제연료유, 부생연료유,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고체연료 등으로 미세먼지 다량 발생시설

○ 지원제외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서 운영 중인 배출시설
-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배출시설(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배출시설 등)
 -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른 중앙·지방 행정기관 유사사업(산단 내 클리팩토리 구축지원 사업 등) 파악

○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5년 3월 17일 ~ 예산소진 시까지

※ 1차 마감 예정일(4/11(금))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제출

- (10108)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 43, 4층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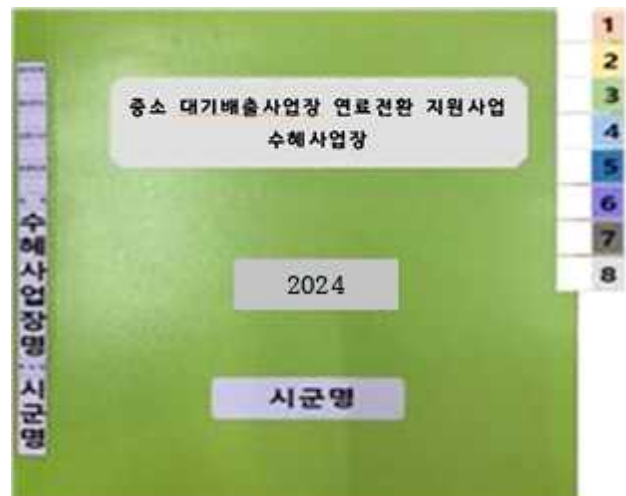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구비서류 항목을 모두 포함한 원본 1부, 사본 2부 제출)
 1. 중소기업 연료전환 지원사업 신청서(개선계획서, 산출내역 등)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교체 전)
 3.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업체, 시설공사업체)
 4.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
 5.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발행)
 6. 저녹스버너 부착 신청서
 7.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9. 이행확인서(신청기업, 시공업체)
 10.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1.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2. 보조금 반납 약속서

- 신청서 제출 예시

※ 사업신청서 총 1부

구비서류 순서대로
번호 인덱스 붙여
파일철로 제출
(정부화일로 제출,
흰색 바인더 X)



○ 선정절차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시·군별 예산한도 내 지원되며, 예산사정 등에 의해 지원 대상이 조정될 수 있음

○ 문의사항

- 담당자(환경본부): 박종원 대리(환경산업팀)
- 담당자 연락처 : 031-985-0586
- 담당자 이메일 : one@ggeea.or.kr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경기도 서체인 경기천년체 다운로드 권장

붙임 2025년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 안내문 1부. 끝.

2025년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 안내문

□ 사업개요

- 주관/시행 : 시군 /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 사업기간 : 2025년 3월 ~ 12월
- 사 업 비 : 180,000천원(국비 100,000천원, 도 40,000천원, 시비 40,000천원)
- 사 업 량 : 2개 시군 / 2개소

연번	지역	사업량	사업비(단위:천원)				비고
			총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2	180,000	100,000	40,000	40,000	
1	파주시	1	117,000	65,000	26,000	26,000	
2	포천시	1	63,000	35,000	14,000	14,000	

○ 사업내용

- 오염물질 다량 배출 액체연료(B-C유 및 정제유 등), 고체연료 사용시설을 청정연료(LNG, LPG) 교체 비용 최대 90% 지원
 - ※ 사업계획 변경 및 지자체 예산편성에 따라 보조금 조정 또는 보조금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 보조금 지원 한도는 <공급연료 종류·시설 규격별 설치비 및 보조금액> 기준을 따름.
- 보조금 분담 비율 :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20%, 자부담 10%(VAT 제외)

□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으로 보일러, 건조시설 등 대기배출시설의 사용연료가 중유(벙커-A, 벙커-B, 벙커-B), 저황왁스유(LSWR), 정제연료유, 부생연료유,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고체연료 등으로 미세먼지 다량 발생시설
 - ※ 저녹스 버너 교체의 경우 지원대상 시설은 「제8장의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에 따름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제2종) 등록업체*의 가스공급(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시공, 보조금 지원 한도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

*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등록업체

○ (우선지원) 아래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스템에 우선 지원

(지자체 사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우선순위 및 지원범위를 정할 수 있음)

- 사업장당 1대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가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공동 열공급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장
-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배출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에서 운영 중인 중질유 등을 사용하는 배출시설

○ (지원제외)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서 운영 중인 배출시설
- 고의적인 위법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배출시설(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배출시설 등)
-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른 중앙·지방 행정기관 유사사업(산단 내 클리팩토리 구축지원 사업 등) 파악

○ (지원조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액 및 집행범위

- (보조금액)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전환 연료 종류 및 시설 규격별로 설치비의 최대 90% 지원 * 보조금 지원한도는 시설, 규격별 용량에 따라 상이함.
- (집행범위) 저녹스버너, 가스공급시설, 옥외(노출)배관 등 기타공사

주요시설		세부내용
저녹스버너 부착 공사		· 제어판넬, 송풍기, 가스트레인, 모듈러, 수분배기 등 포함하여 저녹스버너 용량 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이내에서 지원 ※ 가스법령 등에서 버너만 교체 불가능한 경우 보일러 포함
가 스 공 급	LPG 저장탱크 설치공사	· 토목공사(1톤이상 철근 배근작업), 기화기 및 방폭 전기공사, 메쉬웬스, 공업용 경보기, 소화기 등 안전시설 포함 ※ 저장탱크 재질은 SPV355 등
	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공사	· 터파기 및 포장공사, 이상압력 통보장치, 밸브, 맨홀 등 포함 ※ 배관 재질은 PE PIPE 등
옥외(노출) 배관 등 기타공사		· 밸브, 계량기, 경보기, 보정기, 공업용 차단기, 전기공사 등 포함 ※ 배관 재질은 SPPG PIPE(KSD-3631) 등

< 공급연료 종류·시설 규격별 설치비 및 보조금액 >

(단위 : 천원)

종류	구분	시설규격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가스 전환 시설 공통	저녹스버너 부착 공사	0.1톤이상~0.3톤미만	2,859	2,572	1,429	1,143
		0.3톤이상~0.5톤미만	5,058	4,552	2,529	2,023
		0.5톤이상~0.7톤미만	6,488	5,839	3,244	2,595
		0.7톤이상~1톤미만	7,477	6,728	3,738	2,990
		1톤이상~2톤미만	7,535	6,781	3,767	3,014
		2톤이상~3톤미만	9,582	8,623	4,791	3,832
		3톤이상~4톤미만	11,789	10,609	5,894	4,715
		4톤이상~5톤미만	14,416	12,974	7,208	5,766
		5톤이상~6톤미만	15,253	13,727	7,626	6,101
		6톤이상~7톤미만	16,818	15,136	8,409	6,727
		7톤이상~8톤미만	18,077	16,268	9,038	7,230
		8톤이상~10톤미만	20,032	18,028	10,016	8,012
		10톤이상	21,658	19,492	10,829	8,663

(단위 : 천원)

종류	구분	시설규격	연료전환 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LNG 연료 전환 시설	LNG배관설치 설치공사	10m	36,286	32,657	18,143	14,514
		20m	39,233	35,310	19,617	15,693
		30m	41,753	37,578	20,877	16,701
		40m	44,663	40,197	22,332	17,865
		50m	47,505	42,755	23,753	19,002
		60m	50,141	45,127	25,071	20,056
		70m	53,284	47,956	26,642	21,314
		80m	55,898	50,308	27,949	22,359
		90m	60,094	54,085	30,047	24,038
		100m	63,084	56,776	31,542	25,234
LPG 연료 전환 시설	LPG저장탱크 설비	0.25ton × 1기	10,167	9,150	5,084	4,066
		0.5ton × 1기	11,701	10,531	5,851	4,680
		1.0ton × 1기	14,770	13,293	7,385	5,908
		1.0ton × 2기	20,907	18,816	10,454	8,362
		2.0ton × 2기	33,180	29,862	16,590	13,272
		2.45ton × 2기	38,703	34,833	19,352	15,481
	기화 설비	50kg × 2기	27,760	24,984	13,880	11,104
		100kg × 2기	30,824	27,742	15,412	12,330
		150kg × 2기	35,064	31,558	17,532	14,026
		200kg × 2기	37,273	33,546	18,637	14,909
		300kg × 2기	48,318	43,486	24,159	19,327
		400kg × 2기	56,178	50,560	28,089	22,471
	LPG배관설치	10m	4,004	3,604	2,002	1,602
		20m	4,509	4,058	2,255	1,803
		30m	5,013	4,512	2,507	2,005
		40m	5,518	4,966	2,759	2,207
		50m	6,023	5,421	3,012	2,409
		60m	6,527	5,874	3,264	2,610
		70m	7,032	6,329	3,516	2,813
		80m	7,537	6,783	3,769	3,014
		90m	8,041	7,237	4,021	3,216
		100m	8,546	7,691	4,273	3,418

주1) 보조금 지원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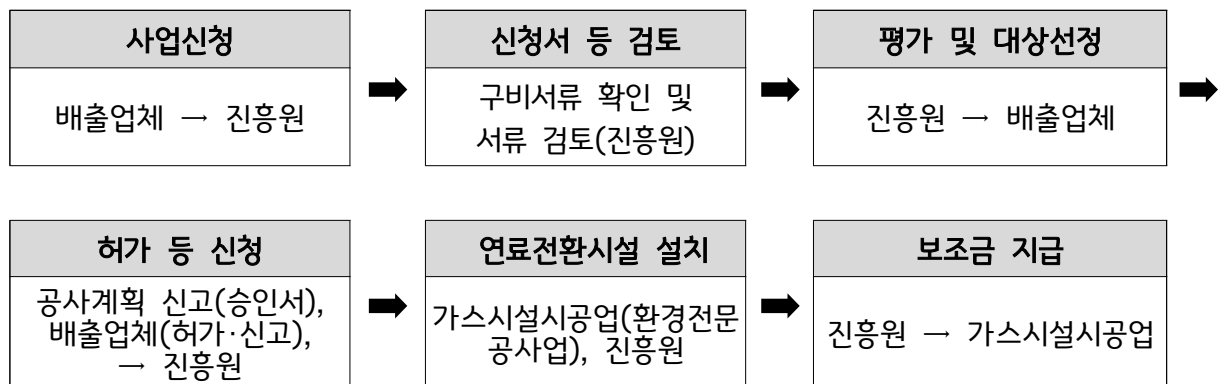
주2)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주3) 보일러 용량 1톤은 619,000kcal로 산정하고 냉온수기의 용량 1RT는 3,320kcal로 환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

주4) LNG배관 설치공사비는 사업장 부지경계선에서 보일러 설비동 까지 산정(도시가스 중앙배관에서 사업장으로 인입되는 공사비는 제외)

※ 표에 명시된 용량의 시설·규격 설치 권장

□ 보조금 지급 절차



- (사업신청) 배출업체는 연료전환 지원사업 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
 - 연료전환시설 설치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 자가측정 결과 등 제출
 - ※ 진흥원은 사업시행 공고 등을 통하여 지원사업을 사전에 안내
- (신청서 등 검토) 연소시설 노후도, 교체연료의 적합성,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환경민원 발생, 개선효과 등 종합검토 및 현장조사 실시
 - 진흥원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진흥원은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평가 및 대상선정) 서류검토(평가위원회 개최) 및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승인 여부를 배출업체에 통보
 - 진흥원으로부터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가스시설시공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내용(계약서 사본 등)을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함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진흥원에 1개월 이내 기간 내에서 계약체결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1회에 한함)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진흥원은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허가 등 신청)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서 제출 및 허가(신고수리)

- 배출업체는 연료전환시설 설치 전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건조설비 등의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 계약 체결 및 선금 신청 >

◇ 배출업체가 가스시설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연료전환시설 설치 공사 계약 체결

- 자부담금은 배출업체가 가스시설시공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국고보조금은 가스시설시공업체가 직접 수령하도록 명시

◇ 가스시설시공업체가 연료전환시설 설치 공사에 대한 선금을 신청

- 「지방회계법」 제35조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설치 공사 완료 전에 보조금의 70% 이내에서 선금 지급 가능
- 연료전환시설 설치 공사가 1개월 내에 착공되지 않거나, 중단된 경우 가스시설시공업체는 관할 진흥원에 선금을 반환하여야 함
- 선금 신청서와 함께 증권·보증서 등 채권 확보 서류, 통장 사본, 그 밖의 선금 수령 대상 증빙서류 등 제출

○ (연료전환시설 설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연료전환시설 설치 완료

- 배출시설 교체 완료 후 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 실시

※ 배출시설 가동 전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서 제출

○ (보조금 지급) 진흥원은 가스시설시공업체로부터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제출되면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지급 전 당초 제시한 연료전환시설이 계획대로 설치되었는지,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 등 확인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보조금 신청 >

◇ 연료전환시설을 시공한 가스시설시공업체가 진흥원에 보조금 신청(붙임 서식)

- 보조금 청구는 당해 연도에 지급이 가능하도록 11월 30일까지 청구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배출업체 대표의 위임날인 확인,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포함) 및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 함께 제출
- 배출업체 대표자의 서명으로 보조금 청구·수령 권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위임장에 인감으로 날인하지 않고 본인 서명을 함

□ 보조금 회수

- (보조금 환수) 진흥원장은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연료전환환시설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붙임 서식)

구 분	보조금 회수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연료전환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예정)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 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함
3. 연료전환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4. 사업장 이전의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진흥원에 이전 계획(폐쇄 예정일, 설치 예정일, 가동개시 예정일 표기)을 제출하고, 적정 관리하는 경우 보조금 미환수

- (보조금 제한 또는 회수의 예외) 연료전환시설 미가동 사유가 아래와 같이 명백하다고 진흥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보조금 환수의 예외로 함
 -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연료전환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회수 보조금 사용 및 상계) 회수한 보조금은 당해연도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에 사용 가능

□ 지원예시



사업 참여시 유의사항

□ 참여 사업장 조건 및 대상기업 선정 기준

-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한 사업장(사용연료 확인)
 -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건조설비 등의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 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제출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행 가능
- 개선계획서 작성은 지원사업 목적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 여부, 개선계획 및 처리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하며, 설계·시설비의 적정성과 개선 효과 부분이 집중적으로 심의·평가되어 지원대상 기업 선정
- 사업 승인 통지 후 1개월 이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 계약 및 착공이 안 될 경우, 사업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연료전환 부대시설 설치 완료 해야함

□ 신청서류 준비

- 오염도 자가측정결과서 제출(측정항목 : 먼지, Sox, Nox)
 - 사업신청서 제출 시 해당시설 오염도 자가측정결과서를 필수 제출
 - 개선계획서의 오염물질농도(저감효율)는 해당시설 오염도 자가측정결과서를 토대로 작성
- 대기배출시설허가(신고)필증 제출 유의사항
 - 대기배출시설인 보일러 사용연료를 확인하기 위함이므로 신고필증의 모든 내용을 첨부하여야 함
- 배출사업장은 가스시공업체에게 신청서류 작성, 접수, 보조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여 사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제출 ※ 인감증명서는 배출사업장, 가스시공업체 모두 제출
- 제출서류의 일체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하며, 사용인감 사용 시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 제출

□ 시공업체 선정 및 관리

- 선정 이후 연료전환 부대시설 설치 계약은 해당 사업장과 직접 체결
 - ※ 연료전환 시설 설치 계약서(시공업체-선정사업장)에 자부담은 사업장에서 가스시설시공업으로 지급하고, 보조금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직접 수령의 내용을 명시할 것
- 선정된 사업장은 착공신고서 제출 시 대기변경허가(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가스 시공업체는 전문성 있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규정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제2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 사업장에 설치하려는 가스시설의 종류가 종별 등록한 업무내용에 적합하여야 함

건설업종	업무내용
가스시설 시공업 (제1종)	·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가스시설 시공업 (제2종)	·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업무내용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하자 발생 책임

- 지원시설의 하자 발생 시는 지원대상기업, 시공업체에 책임이 있으며 발견 즉시 보완하여 보고하여야 함

□ 지원 대상기업 관리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목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허위 및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등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은 당초 신청된 개선계획서에 의하여 지급하며, 지원사업 중 추가되는 금액은 지원 대상기업에서 자부담하여야 함

□ 보조금 지급 및 사업 홍보

- 시설 준공 후 보조금 신청을 하며, 이때 지원대상기업은 자부담금 및 부가 가치세(전체 공사금액 기준)를 시공업체에 지급하여야 함
- 보조금(전체 공사금액 중 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준공검사 완료 후 시공업체에 지급 함
- 지원시설에 道·市 브랜드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함.

□ 유의사항

- 연료전환 이후, 보조금 청구서 제출 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성적서 필수 제출
- 지원 전 대기측정 성적서가 없는 경우, 대기오염물질(먼지, Sox, Nox) 대기 측정 후 성적서 필수 제출
- 보일러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비용, 변경허가(신고) 대행비용, 오염도 자가측정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건조설비 등의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제출 ※제출처 및 문의: 안전보건공단 www.kosha.or.kr
-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목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허위 및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등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은 당초 신청된 개선계획서에 의하여 지급하며, 지원사업 중 추가되는 금액은 지원 대상기업에서 자부담하여야 함
- 지원시설의 의무 사용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지원기업은 지원받은 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기업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기업은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함

※ 추가 자세한 내용은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환경부 대기관리과 '25.1.)」을 참고 바랍니다.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 신청서

- 14 -

개 선 계 획 서

1. 사업(공사)개요

- 해당시설 설치공사 목적 및 필요성
※(상세히 서술)
- 기타 참고사항 : 공사의 특수사항, 특기사항 등

2.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내역

가. 시설(환경오염방지시설) 내역

1) 대상 시설 전, 후 내역

기존시설						변경 후 시설					
배출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배출시설			저녹스버너 및 사용 연료		
시설명	용량	수량	시설명	용량	수량	시설명	용량	수량	시설명	용량	수량

오염물질농도	항 목 (단위)	먼지	Sox	Nox		
	지원 전					
	지원 후					
	저감 효율					

※ 시설 지원 전 오염물질의 농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것 (시험 성적서 등 첨부)
 지원 후 농도는 이론적 효율을 적용하여 기재
 (지원시설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실측 농도 자료 제출)

2) 공정도 (표로 작성)

나. 설계 사양

다. 유지관리계획

- 1) 연간 유지관리계획
- 2) 연간 유지관리비용 산출

3.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가. 설계 작성

작 성 자		설 계 용 역 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업 체 명	
직 위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자격명칭 및 등급		전 화 번 호	

나. 공사비 총괄내역

공 사 종 별		금 액 (단위 : 원, VAT제외)	비 고
순 공 사 원 가	토 목 공 사		
	철 구 조 물 공 사		
	기 계 공 사		
	배 관(덕트) 공 사		
	전 기 공 사		
	소 계		
경 비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경비) * 6%이내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이내
합 계			만단위 절사

다. 공사비 내역서(VAT제외) * 자체서식 활용 가능

공사종류	규격	재질(형식)	수량	금액 (원)	비고
합계					
토목공사					
-					
-					
소계					
철구조물공사					
-					
-					
소계					
기계공사					
-					
-					
소계					
배관공사					
-					
-					
소계					
전기공사					
-					
-					
소계					
건축공사					
-					
-					
소계					
기타공사					
-					
-					
소계					

라. 공사비 세부내역

- 1) 공사 단가 계산서
- 2) 공사 물량 산출 내역서

=> 2023년 물가정보, 적산정보, 건설·기계품셈 의거하여 작성하며 일위대가표, 단가비교서
(물가정보, 물가자료, 조달청등록가격, 견적서 등 3가지 항목 이상) 첨부

※ 공사 부분별 내역서 작성방법

- 토목공사 : 터파기, 잔토처리, 되메우기, 레미콘, 철근, 거푸집, 미장, 방수 등
- 철구조물공사 : 각 단위 환경시설별 구분
- 기계공사 : 기계장치류, 배관공사 등
- 배관공사 : 단위기계별, 단위시설별로 구분하고 재질과 총연장 길이 기재
- 전기공사 : 전기판넬 제작, 결선공사, 계장공사 등
- 특수사항, 특기사항에 의한 경우는 별도 확인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4. 공사 설계도면

- 전체시설 배치도
- 단위 시설 제작도 (치수 표시된 도면)
- 배관 설치도 (치수 표시된 도면)
- 전기판넬 외형 및 회로도
- 기타 특기사항 및 특수공법에 의한 시공은 별도의 도면 제출

※ 공사 설계도면의 경우 A3 제출

5. 연료전환시설 설치 지원 전 사진(상세히)

6. 사업장 소재지 약도

사 업 장 소 재 지 약 도			
업 체 명		대 표 자 명	
본 사 연 락 처	☎	팩 스	
사 업 장 주 소			
사 업 장 연 락 처	☎	팩 스	
담 당 자 연 락 처	☎	핸 드 폰	
<약 도>			

【붙임 1의 4】

저녹스버너 부착 신청서			
1. 사업장 현황			
대 기 종 별		버너설치년도	년
설 비 종 류	☐ 보일러 ☐ 냉온수기 ☐ 건조기기	보일러설치년도	년
사 용 연 료		설 비 용 량	(ton/hr, kcal/hr)
정격연료사용량	(Nm ³ /hr, l/hr)	정격열부하량	(kcal/m ³ ·hr)
전 열 면 적	(m ²)	연소실 용적	(m ³)
2. 설치예정내역			
제 작 사		모 델 명	
판 매 사		사 용 연 료	
설비종류(형식)		설 비 용 량	(ton/hr, kcal/hr)
정격연료사용량	(Nm ³ /hr, L/hr)	정격열부하량	(kcal/m ³ ·hr)
성능확인검사 대상여부	☐ 정격열부하량이 인정검사시 열부하량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 정격연료소비량이 인정검사시 연료소비량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 건조시설에 저녹스버너를 설치한 경우 ☐ 캐스케이드 방식으로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3. 신청 금액			
총 소요금액	천원	보조금신청금액	천원
4. 신청 설비 타기관 등의 용자 및 보조금 기사용 현황			
자금 사용 여부		사용 자금용도 및 금액	
위와 같이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수혜기업) (인) / 신청인(공사업체) (인)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귀하			
※ 구비서류 1.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본 1부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

저녹스버너 설치 익년부터 7년간 질소산화물 저감효율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사후관리 검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3. . .

신청인 (인)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귀하

【붙임 1의 6】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업체 선정,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 ·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연료전환 지원 대상사업장 선정,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장, 지체장, 가스시설시공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환경부) 보조금 사업 접수 및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성명 : (인)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귀하

이 행 확 인 서

■ 회 사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

상기 본인은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 신청함에 있어 각 호에 위배되거나 기타 보조금 승인 조건에 위배될 경우에는 승인내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특히, “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 제한, “나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확인합니다.

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경우

나. 환경센터 협의 및 승인 없이 2년 이내에 시설을 폐쇄한 경우

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라.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감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액

: 보조금 지원액 × {[730일(2년)-지원금 지급일로부터 시설 사용일수] ÷ 730일(2년)}

. . .

대 표 자

(인감도장)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귀하

【붙임 1의 8】

위임장

수임자 (위임을 받는 자, 가스시공업)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명	(인감도장)
	생년월일	
위임자 (위임을 주는 자, 배출업체)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명	(인감도장)
	생년월일	
사업 내역	사용연료	종류 :
	사업기간(일자)	20 . . ~ 20 . . .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가스시공업체, 배출업체 각 1부)

년 월 일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귀하

보조금 반납 협약서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연료전환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용시설을 미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시설 사용기간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약속합니다

< 시설 사용기간별 반납율 >

시설 사용기간	보조금 반납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예정)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 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년 월 일

사업장명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생년월일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 ① 정부와 진흥원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감도장)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